

캄보디아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본 양허표의 해당 분야별 수평적 양허			
보조금		(3), (4) 연구 개발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약속 안함.	
조세 조치		(1), (2), (3) 조세 관련 제한 없음.	
토지		(3) 비 캄보디아 자연인 및 법인은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음.	
기득권 보장	기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는 허가 및 기타 승인 서류에 기재된 소유권, 경영, 운영, 법적 형태 및 활동 범위 관련 조건은 캄보디아의 WTO 가입일 현재 조건보다 더 엄격해지지 않을 것임.		
투자 유인책	(3) 투자법 조항에 준거하여 투자 유인책의 혜택을 원하는 투자자는 캄보디아인 사원을 대상으로 승진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적절한 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시할 의무가 있음.	(3) 제한 없음.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체, 4) 자연인의 주체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배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자연인의 주제	<p>(4)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와 관련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기업인 방문자(BV)</p> <p>기업인 방문자란 자연인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상 회의 참석, 서비스 판매 협상을 포함한 사업상 계약 체결 및 기타 유사한 활동을 위해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자. - 캄보디아에 체류하나 캄보디아 영역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 - 일반 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p>기업인 방문자의 입국 비자는 90일 동안 유효하며 최초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연장 가능함.</p> <p>상업적 주제를 설립할 책임이 있는 자</p>	<p>(4) 시장 접근에 언급된 항목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점근에 대한 체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체한	추가적 약속
기업내 전근자(ICT)	<p>다른 당사국에 위치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해당 법인의 임보디아 내 지점, 자회사, 또는 계휴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보디아에 일시적 입국을 하려는 자연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p> <p>a) <u>임원</u>: 입국시 노동시장심사 규정 준수를 요구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주로 기업의 관리 및 경영을 통솔하고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상급 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관리 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p> <p>b) <u>관리자</u>: 법인에 고용되어 있으며 입국시 노동시장심사 규정 준수를 요구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법인의 상품, 서비스, 연구개발, 사용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독점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주로 기업, 혹은 기업내 특정 부서를 통솔하는 자. 다른 감독적·전문적·관리적 종사자의 업무를 감독 또는 통제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또는 이에 대한 추천 및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전문적 종사자를 직접 감독하는 일선 감독자를 제외한 모든 일선 감독자는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음.</p>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체,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 전문가: 조직 내에서 고도의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당해 기업의 서비스, 연구 설비, 기술, 경영 등에 독점적 지식을 보유한 자.</p> <p>기업 내 전근자 범주에 해당하는 자연인에게는 거주·거소와 노동허가서가 요구됨. 거주·거소와 노동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2년 후에는 매년 갱신을 통해 최대 총 5년까지 연장 가능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여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분야별 구체적 약속			
I. 사업 서비스			
1. 전문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캄보디아 로펌과의 상업적 제휴를 통해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¹⁾ 법정에서 직접 고객을 대리하지 못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 법(자국법, 제3국법 및 국제공법 포함)에 대한 자문</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회계, 감사,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 86211, 86212, 86220)	<p>(1) 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는 캄보디아 내에 상업적 주제가 요구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재무서비스 (CPC 8630)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1) 외국법(자국법 및 제3국법 포함)과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 로펌과의 상업적 제휴 관계가 요구되지 않음. 상업적 제휴 관계란 모든 상업적 약정을 포함적으로 의미하며 특정한 법적 형태를 의미하지 않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점근에 대한 제한	내국판매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설계서비스 (자문, 계획, 설계 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웹진니어링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3)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전문 의료서비스 (CPC 931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카보디아 법인과의 협작 투자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치과서비스 (CPC 93123***)			
교정 서비스, 구강 외과 서비스 및 기타 전문 치과 서비스만 해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장서비스 (CPC 842)			
(c) 테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d) 테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e) 기타(CPC 845+849)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윤전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서비스			
(d) 스튜디오녹음 장비 임대서비스 (CPC 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령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령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6. 기타 사업 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1), (2), (3) 2008년 12월 31까지는 약속 안함. (4) 수령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3) 2008년 12월 31까지는 약속 안함. (4) 수령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009년 1월 1일부터 약속을 준수할 것임.
(b) 시장조사서비스 (CPC 86401)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d) 경영컨설팅관련서비스 (CPC 866)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서비스 (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령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령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점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광업 부수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j) 에너지유통 부수서비스(887**)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하여 일반가정, 상공업 시설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전기, 가스연료, 증기 및 온수를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만 포함.		
(k) 인력 알선서비스 (CPC 8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엔지니어링 관련 과학기술 자문서비스 (CPC 8675) (q) 포장서비스 (CPC 876)			
II. 컴퓨팅이션 서비스			
2. 구리어 서비스			
구리어 서비스 (CPC 7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처 체坛	내국인대우에 대처 체坛	추가적 약속
3. 통신 서비스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약정서” (S/GBT/W/2/Rev.1) 및 “주파수 가용성에 관한 시장 접근 체坛” (S/GBT/W/3)에 합치하도록 양해함.			
(a) 음성전화 서비스 (CPC 7521)	(1) 텔레콤 카보다이아로부터 임대한 회선을 통해 서면 서비스 제공. 늦어도 2009년 1월 1일부터: 제한 없음.	(1) 텔레콤 카보다이아로부터 임대한 회선을 통해 서면 서비스 제공. 늦어도 2009년 1월 1일부터: 제한 없음.	캄보디아는 첨부되어 있는 참조 문서에 기재된 의무사항을 준수함.
(b) 패킷교환 테이터 전송서비스 (CPC 7523**)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c) 회선교환 테이터 전송서비스 (CPC 7523**)	(3) 텔레콤 카보다이아에 의해 독점 제공. 늦어도 2009년 1월 1일부터: 카보다이아 보유 주식 비율이 49%까지 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텔레콤 카보다이아에 의해 독점 제공. 늦어도 2009년 1월 1일부터: 제한 없음.	
(d) 텔레스 서비스 (CPC 7523**)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전신 서비스 (CPC 7522)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9**)			
(g) 전용회선 서비스 (CPC 7522**+7523**)			
(h) 전자메일 (CPC 7523**)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i) 음성메일 (CPC 7523**)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j) 온라인 정보 및 테이터베이스 접색 (CPC 7523**)	(3)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k) 전자자료 교환 (EDI) (CPC 7523**)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l)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차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 서비스 포함 (7523**)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 또는 데이터 프로세싱(거래 프로세싱 포함) (CPC 843**)			
(o) 기타 - 이동통신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캄보디아는 허가받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함.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체,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점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1. 일반 빌딩 건설 작업 (CPC 5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조사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조사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일반 토목 공학 건설 작업 (CPC 513)			
3.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 CPC 516)			
4.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5. 기타 (CPC 511, 515, 518)			
IV. 유통서비스			
1. 위탁증개인 서비스 (CPC 621)	(1), (2), (3)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약속 안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조사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조사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캄보디아는 늦어도 2009년 1월 1일부터 약속을 준수할 것임.

*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점유에 대한 제한	내국민여부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도매 서비스 자동차 도매 서비스 (CPC 6111) 자동차 부품 판매 (CPC 6113) 오토바이 및 관련 부품 판매 (CPC 6121) 라디오/텔레비전 장비, 악기, 레코더, 악보 및 테이프 도매 서비스 (CPC 622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소매 서비스 - 자동차 소매 판매 (CPC 61112) - 자동차 부품 소매 판매 (CPC 6113) -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판매 (CPC 61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슈퍼마켓과 대형 백화점2)에 한해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비식품 소매 서비스 (CPC 631+632), 약품과 의료용 및 정형용 의료품 판매(CPC 63211) 제외 - 라디오/텔레비전 장비, 악기, 악보, 오디오/비디오 레코드 및 테이프 소매 서비스 (CPC 63234)

2) 대형 수퍼마켓과 백화점은 연면적 2000m² 을 초과하는 소매점.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체,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브랜차이징 서비스 (CPC 8929)	(1), (2), (3)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약속 안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캄보디아는 늦어도 2009년 1월 1일부터 약속을 준수할 것임.
6. 기타 - 자동차·연료·소매 판매 (CPC 6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 교육 서비스			
3. 고등교육 서비스 (CPC 923) 4. 성인교육 서비스 (CPC 924) 5. 기타 교육 서비스 (CPC 9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캄보디아는 교육 및 전문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제 관행에 합치하는 독립적인 국가 인증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VI. 환경 서비스			
1. 하수 서비스 (CPC 9401) 2.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3. 방역 및 기타 유타 서비스 (CPC 9403) 4. 기타 - 배기ガ스 정화 서비스 (CPC 9404) -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 - 자연 및 전경 보호 서비스 (CPC 9406) - 기타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 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제한 약속	추가적 약속
VII. 금융 서비스				
1. 보험 및 관련 서비스				
(a) 생명보험 서비스 (CPC 81211)	(1) 자연인 또는 법인은 캄보디아 내에서 보험 사업을 하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만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비생명보험 서비스 (CPC 8129)	(1)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의 경우 2009년 1월 1일, 또는 법률이 통과되고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현지 보험 법인에 대한 허가가 완료되는 날 중 이를 날부터 제한 없음. 위의 요건이 충족되거나 전까지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은 캄보디아에서 보험 사업을 하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가 제공할 수 있음.	(1) 제한 없음. 모든 비생명보험 서비스의 경우, 자연인 또는 법인은 캄보디아 내에서 보험 사업을 하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만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제보 협 및 제제 보험 (CPC 81299)	<p>(1) 제한 없음. 단,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계약 금액의 20%를 참보디아 레(Cambodia Re)의 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총 계약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참보디아 보험 회사에 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그 이후부터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단, 기업은 2008년 1월 1일까지 보험계약 금액의 20%를 참보디아 레의 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그 이후부터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d) 보험 관련 보조 서비스 (보험 중개 및 대리 서비스 포함) (CPC 8140)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다음의 (a), (b), (d) 서비스는 상업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함.	(1) 공공으로부터 수취하는 예금은 잡보디아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a) 공공으로부터의 예금 및 기타 상환 가능한 자금 수취 (CPC 81115 - 81119) (b) 소비자 금융, 주택담보대출, 상거래 자금조달 및 페도링 금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 (d)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은행발행 어음을 포함한 모든 지불 및 송금 (CPC 81339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음의 (c), (e) 서비스는 상업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함. (c) 금융 리스 (e) 보증 및 약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수립될 때까지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서비스 업종 분류목록에 따르면, 여기에 기재된 서비스 업종은 CPC 협정에서 다루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의 일부만 포함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차기·고객위탁 매매서비스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 (A)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CD 포함) (B) 외환 (C) 금융파생상품 (선물·옵션 포함) (D) 외환·금리 상품(스왑, 천도금리 약정 포함) (E) 양도성 증권 (F)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금괴 포함) (g) 증권 인수, 증권 발행(사모 및 공모 포함) 등 모든 형태의 증권 발행에 참여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h) 통화 중개 (i) 증권, 파생 상품 및 기타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f)에서 (i)까지 분야의 경우, 감보디아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주체의 형태를 결정하고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하며 정부 및 기타 지정 기관이 해당 기업을 허가할 때까지는 약속 안함. (4) 수령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령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체,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k) 다른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금융 데이터 프로세싱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1) 신용 조회/분석, 투자/포트폴리오 연구, 기업인수/구조조정/기업 전략에 관한 상담 등 (v)부터 (xv)까지 항목에 기재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자문, 중개 및 기타 부수 금융 서비스			
VII. 의료 및 복지 서비스			
<p>1. 병원 서비스 개인 병원 경영 및 소유권</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기술적 문제를 담당하는 이사 중 한 명 이상이 캄보디아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처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처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 접근에 대처 제한	내국인 대우에 대처 제한	추가적 약속
IX.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1. 호텔 (CPC 6411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3성 이상 호텔 ⁴⁾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레스토랑 (CPC 642, 64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지역 특성 ⁵⁾ 을 고려하여 추가함.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2. 여행·일선 대행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여행사에 적용되는 51%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투어가이드는 참보디아 국적자에 한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영화 상영을 포함한 영화관 서비스			

4) 3성 호텔에 대한 정의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될 호텔 등급 분류 제5 조안에 기준함.
5) 주요 기준: 기존 레스토랑의 숫자 및 기준 레스토랑에 미치는 영향, 레스토랑 장소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 지리적 위치 평가, 교통 영향 평가 및 고용 창출 효과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점근에 대한 체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체한	추가적 약속
XI. 운송 서비스			
1. 해상운송 서비스			
연안해운을 제외한 국제운송 (화물 및 여객) (CPC 7211, 721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XXXVIII조 (c)(ii)에 준하여 국제해운운송업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한, 항만에 사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운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보장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선 · 도선 식량 · 연료 · 급수 쓰레기 취합 및 밸리스트 폐기물 처리 비상보수시설 부선 양하 및 수상택시 서비스 선박 대리점 통관 서비스 정박, 부두, 선박접안 서비스 조사 및 분류 서비스
3. 항공운송 서비스			
- 항공기 관리 및 수리 서비스 (CPC 886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점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여부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도로 운송 서비스			
(a) 승객 운송 (CPC 7121+7122)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b) 화물 운송 (CPC 7123)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c) 운전기사 있는 상업용 차량	(3)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임대 (CPC 7124)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도로운송 장비 유지 및 수리 (CPC 6112+886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도로운송 보조서비스 (CPC 744)			
7. 패이프라인 운송 서비스			
(a) 연료 운송(CPC 7131)	(1) 국가가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양허 약정서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1) 제한 없음.	
(b) 기타 운송 (CPC 7139)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국가가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양허 약정서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참조 문서

적용범위

아래 사항은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의 규제 기본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에 관한 것이다.

정의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a)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설비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 (a)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 보호장치

1.1. 통신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방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1.2. 보호장치

1.1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b)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c) 다른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본 항은 양허한 분야에 한해, 한 공급자의 이용자들이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 접속에 적용된다.

2.2. 상호접속을 위한 요건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 (a) 비차별적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 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되어야 한다.
- (c) 요청이 있는 경우,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율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3.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2.4.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2.5. 상호접속의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a) 언제든지, 또는
- (b)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 기간 후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이러한 조건 및 요금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내기관(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 포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그것이 당사국에 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사국이 규정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허가 기준 공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a)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 (b) 개별 허가 요건

요청이 있을 때 허가 거부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해야 한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되, 특정한 정부 사용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캄보디아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II조6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 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 필요조건
시청각 서비스 : 시청각 저작물 전송	시청각 저작물 공동제작 협정에 기의거한 조치로서 그려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청각 저작물을 내국민 대우가 부여됨.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관련 협정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국가	무기한	이러한 협정의 목적은 관련 국가들 간 문화적 유대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시청각 서비스 : 영화영사물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	시청각 저작물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저작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지원 프로그램 등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	문화 협력 분야에서 양자간, 혹은 복수국간 협정이 체결된 국가	무기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캄보디아가 오랜 문화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문화적 정책성을 보존 및 증진하기 위한 것임.
시청각 서비스 :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 및 공중에 대한 방송 전송을 통한 배급	특정 원산지 기준을 만족하는 시청각 저작물에게 방송 전송권에 있어서 내국인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관련 협정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국가	무기한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내의 문화적 가치 및 지역 내외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지상 운송	운송 및 경유 운송 협정 축진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관련 협정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국가	무기한	특히 이웃 국가와의 관광 및 운송 서비스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내륙 수로	메콩강 유역에서 선박 운항을 하는 국가에게 적용되는 절차, 요금, 규정을 수립.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관련 협정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국가	무기한	메콩강 항행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해상 운송	시암만에서 선박 운항을 하는 국가에게 적용되는 절차, 요금, 규정을 수립.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관련 협정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국가	무기한	시암만 항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6) 역주 : GATS 제III조